

제4기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 현황 ('21~'23)

- 무인기 분야 -



CONTENTS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 현황 ('21~'23)

※ 해당 자료는 '21~'23년 內 소관부처에 개선 건의 및 회신 받은 내용과, '23년도 3월 소관부처를 통해 이행현황을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무인기 분야 (5건)

- 국내 드론의 정의 확립 및 우선구매 제도 신설
- 드론 S/W 직접생산확인 증명 제도 심사규정 신설
- 자체중량 150kg 초과 무인항공기에 대한 항공기기술키준 마련
-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확인서 양식 마련
-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한 안티드론시스템 구현 및 실증 허가 방안 마련

국내 드론의 정의 확립 및 우선구매 제도 신설

무인기 분야

애로내용

드론법에 드론의 활용촉진 및 기술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산드론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국산드론의 정의와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산드론을 위장한 해외 제품의 공급이 끊이지 않고 있음

건의결과



국산 드론의 정의와 구별기준을 확립하여 국산 드론을 구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국내산 드론을 우선구매 하도록 제도 신설 예정

* 드론 분야 국산인증 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21.4~'22.6) 및 관련 법령 개정 예정(~'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개선/파급효과



- 수입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속이거나, 수입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는 '위장 국산 드론' 차단 (국내 드론 개발업체의 성장기반 마련)
- 공공분야 국산 드론 비율 17%p 이상 확대 예상('20년 50% -> '22년 67%)
- 통합인증관리시스템(UAM)과 연계되는 기초기술 개발의 저변 확장

산업융합촉진 임부즈만

드론 S/W 직접생산확인 증명 제도 심사규정 신설

무인기 분야

애로내용

드론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국산 소프트웨어의 정의가 없고 국산임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 절차, 방법 등도 없어, 수요자나 공급자가 국산 소프트웨어의 적용과 국산화 수준의 판단을 요구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검증해 줄 적절한 방안이 없음

건의결과



국방 및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드론의 국내산 소프트웨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산드론 기술기준의 정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술 수준을 조사하는 절차를 통해 개정 예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증장기 검토 및 개정 예정 (~'2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개선/파급효과



- 국내 드론 S/W 개발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 보안성과 독립성을 갖춘 국산 드론 S/W를 통해 보안에 취약했던 오픈소스 기반
- 드론 S/W 문제를 해결

산업융합촉진 임부즈만

자체중량 150kg 초과 무인항공기에 대한 항공기기술기준 마련

무인기 분야

애로내용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형식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중량 150kg 초과 무인항공기에 대한 항공기기술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형식증명 요건에 맞는 개발요구도 수립이 어렵고 이로 인해 형식증명 획득에 불확실성 존재

건의결과



국제기구(ICAO)에서 국제표준화 기준을 마련 중(~'26)에 있으며,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기준 제도화 예정

* 무인항공기에 대한 항공기기술기준 수립 및 제정(~'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개선/파급효과



자체중량 150kg 초과 무인항공기 항공기기술기준 수립 및 제정

- 수입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속이거나, 수입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는 '위장 국산 드론' 차단(국내 드론 개발업체의 성장기반 마련)
- 공공분야 국산 드론 비율 17%p 이상 확대 예상('20년 50% → '22년 67%)
- 통합인증관리시스템(UAM)과 연계되는 기초기술 개발의 저변 확장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확인서 양식 마련

무인기 분야

애로내용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 시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나, 확인서 양식이나 예시 등이 부재하여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비행허가 획득에 애로사항 존재

건의결과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에 제공하고, 지방청 무인항공기 비행승인 담당자는 비행허가 신청자에게 해당 서식을 배포하여 활용토록 추진

* "국가항공보안 계획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에 제공하고, 비행 허가 신청자에게 해당 서식을 배포('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개선/파급효과



-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획득 소요기간 약 82.5% 감소 예상 (40일 → 7일)
- 연평균 비행허가 획득 건수 약 2배 증가 예상
- 비행허가 서류심사 자료작성 소요시간 및 인건비 약 97.5% 감소 예상
- 소요기간 약 40일 → 1일, - 1대당 소요 인건비 약 4,000만원 절감 기대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한 안티드론시스템 구현 및 실증 허가 방안 마련

무인기 분야

애로내용

안티드론 제어 통신시스템의 운영 실증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고자 하나
현 법령은 이러한 기술개발의 결과를 시험할 목적의 접근은 허용하지 않음

건의결과



재난관련 기관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주파수를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실증특례사업에
사용 가능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시험환경 활용 권고('22)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 (참고)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에서는
융합·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규제개선 확정 건에 대해서도 이행 현황 및 기업 애로해소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애로해소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문의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1670-9050" / "hyelim0507@kitech.re.kr"으로 문의
또는 <https://www.oico.kr/>로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